

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4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328호로 2024년 4월 9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4. 13. ~ 2024. 4. 17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지원대상으로 안 제14조(협력체계 구축)에 규정된 대상까지 포함<sup>1)</sup>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, 지원종류 또한 “경비”에서 “경비 및 물품 등”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단체 등에서 양질의 교통안전사업(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)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--

1) 서울지 타 자치구 중 재정지원 등 지원대상으로 “협의체계 구축”에 규정된 대상까지 포함하는 자치구는 11개임. (강동, 강서, 관악, 광진, 구로, 노원, 동작, 마포, 서대문, 은평, 중랑)

# 참고 자료

## 1

## 교통안전법

**제3조(국가 등의 의무)**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재정 및 금융조치)**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, 재정지원 등 재정·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5. 19.>

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5. 19., 2020. 6. 9.>

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
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
3.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(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) 운영자